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73 |
|----------|-----|

제출년월일 : 2000.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획관리국 총무과

### 제안이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점을 개선·보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안 제22조제2항)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 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안 제22조제3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안 제22조제4항)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 로 기간 확대 (안 제22조제7항)
-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으로 확대 (안 제22조제8항)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 함. (안 제23조)
-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 (별표 2)

개정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6610호, '99.12.7)

개정조례안 : 불입

###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입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연가일수에서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한다.

제21조제6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생리기마다 1일”을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결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동조제7항(중전의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동조 제8항(중전의 제7항)중 “명예퇴직”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으로 한다.

제2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 [별 표 2]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2조제1항 관련)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 혼 | 본 인                             | 7   |
|     | 자 녀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출 산 | 배우자                             | 1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워킹데이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   |
|--|--|
| <p>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산입) ①~③ (생략)</p> <p>제21조(공가) (생략)</p> <p>1.~5. (생략)</p> <p>6.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p> <p>제22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u>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③ <u>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u><br/>(신설)</p> <p>④~⑤</p> <p>⑥ <u>교육감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u></p> <p>⑦ <u>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⑧ (생략)</p> <p>제23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u>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p>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공가)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6.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u> . . . . .</p> <p>제2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u></p> <p>③ . . . . . <u>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u> . . . . .</p> <p>④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u></p> <p>⑤~⑥ (현행 ④~⑤호와 같음)</p> <p>⑦ . . . . . <u>재직기간 중에</u> . . . . .</p> <p>⑧ . . . . . <u>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u> . . . . .</p> <p>⑨ (현행 제⑧호와 같음)</p> <p>제23조(휴가기간중의 휴가일수) . . . . .</p> <p>. . . . . <u>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10호, '99.12.7)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6.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⑦행정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74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로 얻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전화 (0431)279-0229 /전송(0431)271-869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과장 박영하 사무관 연승흠 담당자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 - 78

시행일자 2000. 03. 31.

(공 개)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     |       |              |      |            |
|-----|-------|--------------|------|------------|
| 선람  | 교육감   | 충청           | 자치   |            |
| 접수  | 일자    | 2000. 3. 31. | 결재   | 교육감 9444   |
|     | 시간    |              | 공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
|     | 번호    | 1839         | 의회담당 | 이찬동        |
| 처리과 | 기획관리과 |              | 심사자  |            |
| 담당자 | 신영석   |              | 심사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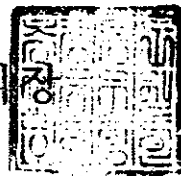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 의안번호  | 안 건 명                                  | 심사결과 |
|-------|--|------|
| 111-1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111-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111-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111-4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111-5 | 2001학년도초·중통합운영학교설치계획안                  | 원안가결 |
| 111-6 | 학교설립계획안                                | 원안가결 |
| 111-7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 111-8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의결 |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0 - 32 호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3월

충청북도교육청



| 부 의 안 건                                | 주 요 골 자   |
|--|---|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527억 4,336만 3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587억 9,778만 3천원이 증액된 8,115억 4,114만 6천원으로 편성</li> <li>○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8억 9,159만 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8억 8,156만 6천원 증액</li> <li>○ 세출예산 학교교육 514억 815만 5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억 1,923만원, 급여·복지 39억 4,032만 3천원, 교육행정 32억 2,604만 4천원, 기타경비 403만 1천원 계상</li> </ul> |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 조례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li> <li>○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li> <li>○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li> </ul>   |

| 부 의 안 건   | 주 요 골 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를 “재직기간 중에” 로 기간 확대</li> <li>○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 에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 으로 확대</li> <li>○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 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 함</li> <li>○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li> </ul>   |
| <p>○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경원조례중개정 조례안</p>              | <p>○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p>   |
| <p>○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일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li> <li>○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 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li> <li>○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li> <li>○ 군입대에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li> <li>○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직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는 종사하지 못함</li> <li>- 군입대 휴직 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li> </ul> </li> </ul> |



| 부 의 안 건                        | 주 요 골 자  |
|--------------------------------|--|
|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br>○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br>○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br>○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

